

【 8 】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발의연월일 : 2005년 5월 11일

발 의 자 : 이종호 의원 외 2인

□ 제정이유

-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수립과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주요골자

- 가.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시장이 하여야 할 기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누릴 권리와 각종 보행환경개선 시책에 대한 알권리와 함께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둠(안 제4조)
- 라.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시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 마. 보행환경 조성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 제정조례안 : 별 첨

□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05. 4. 18 ~ 5. 2
- 제출 의견 없음

□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통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2.“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 3.“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 1.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 2.보행중심의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3.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 4.보행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
- 5.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전부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하여야 하며,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5. 기타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교통수단의 개선) 시장은 보행권 확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시설 및 이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장하는데 따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
 - 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 8. 보행약자와 유모차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
 - 9.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③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제정지원 등)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